

호주의 배달 플랫폼 종사자 최저기준명령 잠정 시행과 보험산업 영향

김유미 연구원

요약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최저기준명령을 잠정 시행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사업자 부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이는 독립계약자 분류에 따른 소득·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ILO 협약 채택 등 글로벌 보호 규범 확산 추세를 반영함. 이에 따라 시간제·사용량 기반 상해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자가보험회사 활용 및 초과손실 재보험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온디맨드(On-Demand)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명령(Minimum Standards Order; MSO)을 2026년 8월 17일부터 잠정 시행함¹⁾
 - 본 명령은 음식·식료품 배달 플랫폼 사업자(Digital Labour Platform Operator; DLPO)의 전용 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종사자(Employee-Like Worker, 이하 '유사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 업무 수락 후 즉시 또는 신속한 배달이 요구되는 온디맨드 배달에 한하며, 적재용량 1톤 초과 차량 운행자를 비롯해 슈퍼마켓 직접고용 배달원, 비식품 소포 배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최저소득 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기본 안전망을 제도화하고 단계별 분쟁해결 절차와 일반 운영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 협의 채널인 '플랫폼 의견수렴 포럼'을 신설함
 - 실제 배달 참여 시간을 기준으로 운송수단 종류에 따라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시간당 최소 31.30 호주 달러의 최저 안전망 요율(Safety net rates) 지급을 의무화함(표 1) 참조

〈표 1〉 최저 안전망 요율

(단위: 호주 달러)

운송수단	시간당 운임	
	2026년 8월 17일~12월 31일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도보 또는 자전거(페달 구동)	31.30	31.80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스쿠터	31.30	31.80
내연기관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	31.50	32.00
그 외(적재용량 최대 1톤 이하)	32.00	32.50

자료: Fair Work Commission(2026. 8. 11.), "Interim on-demand delivery employee-like worker minimum standards order"

- 본 명령 시행 전 호주 내 약 25만 명의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법정 최저임금 및 산재보험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저임금·고위험 근로 환경이 지속되자 연방정부가 공정근로법을 개정하여 본 명령의 제정 근거를 마련함

1) Fair Work Commission(2026. 8. 11.), "Interim on-demand delivery employee-like worker minimum standards order"

- 맥켈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의 57%가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며, 주요 불안 요인으로 '업무상 재해·질병에 따른 소득 단절(휴업손실)'(65%)과 '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43%)을 지목함²⁾
- 2020년 시드니 등 주요 도심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잇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 결여 및 손해담보 공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제도적 안전망 확충 요구가 대두됨³⁾
- 이에 호주 연방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 처우 개선과 교섭력 확보를 위해 2024년 '공정근로법 개정안 (Closing Loopholes No. 2 Act 2024)'을 통과시켰으며, 공정근로위원회의 신설된 규제 권한(Part 3A-2)에 근거하여 본 임시 최저기준명령을 제정·시행함

○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유사근로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상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해야 함

- 다만 법정 산재보험 수준의 전면 보장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상해보험금 지급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와 상계 처리될 수 있고 동일 재해에 대한 양 보험 간 중복 청구 및 이중 수급은 금지됨
-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상해보험의 담보 수준을 유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경할 경우 이를 계약상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유사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반면, 유사근로자는 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본인의 비용으로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유상운송 목적으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 및 통지할 의무가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강화는 국제적 노동 규범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국제노동기구(ILO)도 2026년 6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에 관한 협약, 2026(제193호)」을 공식 채택함⁴⁾

- 동 협약은 온·오프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무 실태에 따른 고용상 지위 분류, 최저임금 보장, 산재 예방 및 사회보장 적용 등을 핵심 의무로 규정함
- 아울러 AI·알고리즘에 의한 배정 기준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고 계정 정지 등 불이익 발생 시 사유 설명을 요구하며 사람이 직접 심사하는 재검토 절차를 보장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플랫폼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로 시간제·사용량 기반 보험(Usage-based Insurance; UBI) 도입이 촉진되는 한편, 비용 효율화를 위한 자가보험회사(Captive) 활용 및 초과손실 재보험(XOL)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

- 호주는 법정 산재보험의 편입 대신 플랫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알고리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함
- 플랫폼의 운행 데이터와 보험회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배달 중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고 실제 노무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시간제·사용량 기반 상해보험 상품 개발·공급이 촉진되고 실시간 보험료 정산 인프라 구축 수요가 본격화될 수 있음⁵⁾
-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우버가 설립한 자가보험회사 알레카(Aleka), 도어대시의 자가보험회사 아고라(Agora)와 같이 위험을 자체보유하고 손실 분산을 위해 초과손실 재보험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⁶⁾

2) McKell Institute(2023), "Tough Gig: Worker Perspectives on the Gig Economy"

3) The Guardian(2020. 11. 24.), "NSW government announces taskforce to investigate food delivery deaths"

4) ILO(2026. 6. 15.),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2026"

5) The Geneva Association(2022), "Gig Economy Work: Mind the protection gaps"

6) R Street Institute(2024),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Insurance: Problems and Solutions"